NO.

#### PLAINTIFF

First	Middle	Last	Plaintiff's DOB
Name(s) of all protected	persons, including minor child/ren	and DOB:	
V.			
DEFENDANT			
First	Middle	Last	Suffix
Defendant's Address:		DEFENDANT IDENTIFIERS	
		DOB	HEIGHT
		SEX	WEIGHT
		RACE	EYES
		HAIR	
CAUTION: Weapon Involved Weapon Present on the Property		SSN	
		DRIVERS	
		LICENSE #	
		EXP DATE	STATE

□ Weapon Ordered Relinquished

## The Court Hereby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over the parties and subject matter, and Defendant will be provided with reasonable notice and opportunity to be heard.

## The Court Hereby Orders:

- Defendant shall not abuse, harass, stalk, threaten, or attempt or threaten to use physical force against any of the above persons in any place where they might be found.
- Except for such contact with the minor child/ren as may be permitted under Paragraph 5 of this order, Defendant shall not contact Plaintiff, or any other person protected under this order, by telephone or by any other means, including through third persons.
- $\Box$  Additional findings of this order are set forth below.

Order Effective Date\_\_\_\_\_

Order Expiration Date\_\_\_\_\_

#### NOTICE TO DEFENDANT

Defendant is hereby notified that failure to obey this order may result in arrest as set forth in 23 Pa.C.S. § 6113 and that violation of the order may result in a charge of indirect criminal contempt, as set forth in 23 Pa.C.S. §6114. Consent of Plaintiff to Defendant's return to the residence shall not invalidate this order, which can only be changed or modified through the filing of appropriate court papers for that purpose. 23 Pa.C.S. §6108(g). If Defendant is required to relinquish any firearms, other weapons, ammunition, or any firearm license, those items must be relinquished to the sheriff o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within 24 hours of the service of this order. As an alternative, Defendant may relinquish any firearm, other weapon, or ammunition listed herein to a third party provided Defendant and the third party first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to obtain a safekeeping permit. If, due to their current location,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and their current location no later than 24 hours after the service of this order. Defendant is further notified that violation of this order may subject him/her to state charges and penalties under the Pennsylvania Crimes Code under 18 Pa.C.S. § 6105 and to federal criminal charges and penalties under 18 U.S.C. § 922(g)(8) and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18 U.S.C. § 82261-2262.

원고				
<u></u>				
이름첫자 가운데자 성	원고의 생년월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모든 보호대상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대.				
피고				
이름 첫 자 가운데 자 성	이름 끝 호칭			
고의 주소: 피고 인적사항				
생년월일	신장			
성별	몸무게			
주의사항: 민광	눈동자색			
□ 므기가 과려되				
□ 채다 자스에 뜨기 이으 ^^ㅋㅋㅋㅋㅋㅋ				
□ 데 3 3 2 1 1 7 1 있음 □ 무기를 내어 놓으라고 요청했음 만료일	발급주			

## 본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 및 해당 주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피고는 합당한 통지 및 자신의 진술이 청취되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 이에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 피고는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위 사람들 중 아무 사람에 대해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스토킹하거나,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와의 접촉이 이 명령서의 제 5 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나 이 명령서에 따라 보호되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화나 또는 제 3 자를 통한 방법 등의 그 외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이 명령의 추가 결정사항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령 유효날짜

명령 만료날짜

#### 피고에게 알림

피고는 이 보호명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23 Pa.C.S. §61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포될 수 있고 이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3 Pa.C.S. §6114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접법정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피고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원고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 보호명령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며**, 이 명령은 그런 목적으로 적절한 법원문서를 제출함으로써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23 Pa.C.S. §6108(g). 피고가 모든 화기, 기타 무기, 탄약, 또는 화기 면허를 내어 놓도록 요구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이 보호명령의 송달 후 24시간내에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 행 기관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고가 피고와 제3자에게 이 문서에 열거된 모든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을 제3자에게 내어 주는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 피고와 그 제 3자는 먼저 안전보관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현재 있는 위치때문에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을 제한시간 내로 수거할 수 없는 경우, 피고는 이 명령서 송달 24시간 내로 해당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 및 해당보관장소가 열거된 선서 진술서를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이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18 Pa.C.S. § 6105에 따른 펜실베니아 주 형법에 따라 주정부의 기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8 U.S.C. § 922(g)(8) 및 Violence Against Women Act(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18 U.S.C. §§2261-2262에 따라 연방정부의 형사 기소 및 처벌도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AND NOW, this \_\_\_\_\_ day of \_\_\_\_\_, 20\_\_\_\_ upon consideration of the attached Petition for Protection from Abuse, the court hereby enters the following Temporary Order: 오늘 년 월/일 부로, 첨부된 폭행으로부터의 보호 청원서에 대한 사려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임시 명령을 발부합니다:

- □ Plaintiff's request for a Temporary Protection Order is **denied**.
- □ Plaintiff's request for a Temporary Protection Order is **granted**.
- □ 1. Defendant shall not abuse, harass, stalk, threaten, or attempt or threaten to use physical force against any of the above persons in any place where they might be found.
- $\hfill\square$  2. Defendant is evicted and excluded from the residence at:

or any other permanent or temporary residence where Plaintiff or any other person protected under this order may live. Plaintiff is granted exclusive possession of the residence. Defendant shall have no right or privilege to enter or be present on the premises of Plaintiff or any other person protected under this order.

- □ 3. Except for such contact with the minor child/ren as may be permitted under Paragraph 5 of this order, Defendant is prohibited from having ANY CONTACT with plaintiff, or any other person protected under this order,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t any loc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contact at plaintiff's school, business, or place of employment. Defendant is specifically ordered to stay away from the following locations for the duration of this order:
- □ 4. Except for such contact with the minor child/ren as may be permitted under Paragraph 5 of this order, Defendant shall not contact Plaintiff, or any other person protected under this order, by telephone or by any other means, including through third persons.

# $\Box$ 5. CUSTODY

□ There is a current custody order as to the child/ren of the parties:

(county court and docket number)

- □ THIS ORDER SHALL NOT SUPERSEDE THE CURRENT CUSTODY ORDER.
- □ THIS ORDER SUPERSEDES ANY PRIOR ORDER RELATING TO CHILD CUSTODY.
- □ Until the final hearing, all contact between Defendant and the child/ren shall be limited to the following: \_\_\_\_\_

- 임시 보호명령을 위한 원고의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임시 보호명령을 위한 원고의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 I. 피고는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상기의 어떠한 사람도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스토킹하거나,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 고. 피고는 다음 주소의 거주지에서 퇴거되며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는 원고나 이 명령 하에 보호되는 기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타 영구 또는 임시 거주지에서도 퇴거되며 출입이 금지됩니다. 원고에게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권이 부여됩니다. 피고는 원고나 이 명령으로 보호되는 사람이 있는 구역 내에 들어가거나 있을 수 있는 권리나 특전이 없습니다.

- □ 3. 이 명령 5 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와 접촉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와, 또는 이 명령 하에 보호되는 사람과, 원고의 학교, 사업체 또는 직장 등 어떤 장소에서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어떠한 접촉**도 금지됩니다. 피고는 이 명령의 유효기간 동안 특히 다음과 같은 장소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 4. 이 명령 5 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와의 접촉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이 명령 하에 보호되는 원고 또는 기타 사람들에 전화나 제 3 자를 통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 외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 🗆 5. 양육권

□ 현재 당사자들의 자녀들에 대해 발부된 양육권 명령이 있습니다:\_\_\_\_\_

(카운티 법원 및 사건처리기록부 번호)

- □ 이 보호명령은 현 양육권 명령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 이 보호명령은 자녀 양육권에 관련된 이전 명령을 대체합니다.
- □ 최종심리가 열릴 때까지, 피고와 자녀(들) 사이의 모든 접촉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_\_\_\_\_

□ Pending the outcome of the final hearing in this matter, Plaintiff is awarded temporary custody of the following minor child/ren:

The local law enforcement agency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hild/ren are located shall ensure that the child/ren are placed in the care and control of the Plaintiff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order.

# □ 6.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RESTRICTIONS

Check all that apply:

- □ Defendant is prohibited from possessing or acquiring any firearms for the duration of this order.
- □ Defendant shall relinquish to the sheriff o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the following firearm licenses owned or possessed by Defendant.
- Defendant is directed to relinquish to the sheriff o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any firearm, other weapon, or ammunition listed in Attachment A to Temporary Order, which is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under Defendant's control or in Defendant's possession

Defendant may relinquish any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to the sheriff o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As an alternative, Defendant may relinquish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to a third party provided Defendant and the third party first comply with all the requirements to obtain a safekeeping permit. Defendant must relinquish any firearm, other weapon, ammunition, or firearm license ordered to be relinquished no later than 24 hours after service of this order. If, due to their current location,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cannot reasonably be retrieved within the time for relinquishment, Defendant shall provide to the sheriff o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an affidavit listing the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and their current location no later than 24 hours after the service of this order. Failure to timely relinquish any firearm, other weapon, ammunition, or any firearm license shall result in a violation of this order and may result in criminal conviction under the Uniform Firearms Act, 18 Pa.C.S. §6105.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에게 다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권이 주어집니다:

자녀(들)가 위치한 관할구역 내의 지역 법집행기관은 이 보호명령서의 조항에 따라 반드시 자녀가 보호하고 통제하는 상태에 있게 해야 합니다.

# □ 6.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에 대한 제한사항

모든 해당사항에 체크하십시오:

- 피고는 이 명령의 유효기간동안 어떠한 화기도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피고는 소유하거나 소지한 다음과 같은 화기면허를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 피고는 피고의 관리 하에 있거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급에 의해 이 문서에 포함된 임시보호명령서에 붙인 첨부문서 A 에 열거된 모든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을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피고는 모든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을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고가 제3자에게 모든 화기, 기타 무기 및 탄약을 제3자에게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피고와 그 제 3자는 안전보관허가 취득을 위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는 내어 놓아야 할 모든 화기, 기타 무기, 탄약 또는 화기면허를 이 명령서 송달 후 24 시간내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물품이 현재 있는 장소상의 이유로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을 포기인도 제한시간 내에 인도할 수 없는 경우, 피고는 이 명령서 송달 24시간내로 해당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및 해당보관장소가 열거된 진술서를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화기, 기타 무기, 탄약 또는 화기면허를 제한시간 내에 내어 놓지 않은 경우 이 보호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Uniform Firearms Act(통합화기법), 18 Pa.C.S. §6105 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Box$  7. The following additional relief is granted:

□ Defendant is prohibited from stalking, as defined in 18 Pa.C.S. §2709.1, or harassing, as defined in 18 Pa.C.S. §2709, the following family and household members of Plaintiff.

□ 7. 다음과 같은 추가 구제조치가 승인되었습니다:

□ 피고가 18 Pa.C.S. §2709.1 에 규정된 스토킹, 또는 18 Pa.C.S. §2709 에 정의된 괴롭히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재된 원고의 가족과 식구들에게 할 수 없도록 금지됩니다.

Name / 이름	Address (optional) / 주소 (선택 기재사항)	Relationship to Plaintiff / 원고와의 관계

□ Other relief:	□ 기타 구제조치:	
■ 8. The Pennsylvania State Police, the municipal police, or the sheriff shall accompany Plaintiff to his or her residence to retrieve personal belongings or accompany Plaintiff while the petition or order is served on Defendant.	<ul> <li>■ 8. 원고가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펜실베니아 주 경찰, 자치 경찰, 또는 보안관에게 원고의 거주지까지 원고와 동행하도록 또는 청원서 또는 명령서가 피고에게 송달되는 동안 원고와 동행하도록 명령합니다.</li> </ul>	
<ul> <li>9. A certified copy of this order shall be provided to the sheriff or police department where plaintiff resides and any other agency specified hereafter: (insert name of agency)</li> </ul>	□ 9. 이 명령서의 인증된 사본을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안관 사무실이나 경찰서, 그리고 다음에 명시된 기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행사 이름 삽입) 	
□ 10. THIS ORDER SUPERSEDES ANY PRIOR PROTECTION FROM ABUSE ORDER OBTAINED BY THE SAME PLAINTIFF AGAINST THE SAME DEFENDANT.	□ 10. 이 명령은 동일한 원고가 동일한 피고에 대해 취득한 모든 이전 폭행으로부터의 보호명령서를 대체합니다.	
<ul> <li>11. THIS ORDER APPLIES IMMEDIATELY TO DEFENDANT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li> <li>OR UNTIL OTHERWISE MODIFIED OR TERMINATED BY THIS COURT AFTER NOTICE AND HEARING.</li> </ul>	<ul> <li>□ 11. 이 보호명령서는 피고에 대해 즉시</li> <li>유효하며 일까지 또는</li> <li>통지 및 심리가 끝난 후 이 법원에 의해 달리 수정되거나</li> <li>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li> </ul>	

## **NOTICE TO DEFENDANT**

Defendant is hereby notified that failure to obey this order may result in arrest as set forth in 23 Pa.C.S. § 6113 and that violation of the order may result in a charge of indirect criminal contempt as set forth in 23 Pa.C.S. §6114. Consent of Plaintiff to Defendant's return to the residence shall not invalidate this order, which can only be changed or modified through the filing of appropriate court papers for that purpose. 23 Pa.C.S. §6108(g).

If Defendant is required to relinquish any firearms, other weapons, ammunition, or any firearm license, those items must be relinquished to the sheriff o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within 24 hours of the service of this order. As an alternative, Defendant may relinquish any firearm, other weapon, or ammunition listed herein to a third party provided Defendant and the third party first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to obtain a safekeeping permit. If, due to their current location,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cannot reasonably be retrieved within the time for relinquishment, Defendant shall provide an affidavit to the sheriff o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listing the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and their current location no later than 24 hours after service of this order. Defendant is further notified that violation of this order may subject him/her to state charges and penalties under the Pennsylvania Crimes Code under 18 Pa.C.S. § 6105 and to federal criminal charges and penalties under 18 U.S.C. § 922(g)(8) and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18 U.S.C. §§2261-2262.

## <u>피고에게 알림</u>

피고는 이 보호명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23 Pa.C.S. §6113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포될 수 있고 이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3 Pa.C.S. §611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접법정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피고가 집으로 돌아오는 데 원고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 보호명령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며, 이 명령은 해당 목적에 대한 적절한 법원문서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23 Pa.C.S. §6108(g).

피고가 모든 화기, 기타 무기, 탄약 또는 화기 면허를 내어 놓도록 요구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이 보호명령서의 송달 후 24 시간내에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고는 이 문서에 열거된 모든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을 제 3 자에게 내어주는 방법입니다. 단, 이경우 피고와 그 제 3 자는 먼저 안전보관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 때문에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을 내어 주어야 할 시간 안으로 내어 줄 수 없을 경우, 피고는 이 명령서 송달 24 시간내로 해당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 및 해당보관장소가 열거된 진술서를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행 기관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이 보호명령서를 위반할 경우 18 Pa.C.S. § 6105 에 따른 펜실베니아 주 형법에 따라 주정부에 의하여 기소 및 처벌될 수 있으며, 18 U.S.C. § 922(g)(8) 및 Violence Against Women Act(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18 U.S.C. §§2261-2262 에 따라 연방정부 형사 기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 **NOTICE TO SHERIFF, POLICE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This order shall be enforced by the police department or sheriff who has jurisdiction over Plaintiff's residence OR any location where a violation of this order occurs OR where Defendant may be located. If Defendant violates Paragraphs 1 through 6 of this order, Defendant shall be arrested on the charge of indirect criminal contempt. An arrest for violation of this order may be made without warrant, based solely on probable cause, whether or not the violation is committed in the presence of a police officer or sheriff.

Subsequent to an arrest, the law enforcement officer or sheriff shall seize all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in Defendant's possession which were used or threatened to be used during the violation of the protection order or during prior incidents of abuse and any other firearms in Defendant's possession. Any firearm, other weapon, ammunition, or any firearm license must be delivered to the sheriff o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which sheriff or agency shall maintain possession of the firearms, other weapons, or ammunition until further order of this court, unless the weapon(s) are evidence of a crime, in which case, they shall remain with the law enforcement agency whose officer or sheriff made the arrest.

# <u>보안관, 경찰 및 법집행관에게 알림</u>

본 보호명령서는 원고 주거지 또는 이 보호명령이 위반된 장소 또는 피고가 위치한 장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 및 보안관에 의하여 시행됩니다. 만일 피고가 이 보호명령서 1 항에서 6 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간접법정모욕죄로 체포될 것입니다. 이 보호명령서 위반으로 인한 체포는 체포영장 발부 없이, 경찰관 또는 보안관 앞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그럴 만한 사유만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법집행관이나 보안관은 보호명령 위반할 당시 또는 이전 폭행이 발생할 때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한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화기, 기타 무기 또는 탄약, 그리고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그 이외의 화기들을 모두 압수해야 합니다. 모든 화기, 기타 무기, 탄약 또는 모든 화기 면허는 보안관 또는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그 보안관 또는 기관은 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화기, 기타 무기(들) 및 탄약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무기가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해당 체포를 집행한 경찰관 또는 보안관이 속한 법집행 기관이 보관해야 합니다.

## BY THE COURT / 판결한 법원:

Judge / 판사

Date / 날짜